#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

## <u>1. 총</u>칙

#### 1.1. 목적

본 정책은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(이하 '회사')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중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법규에 대응하고, 정보의 오남용, 훼손, 변조, 유출 등의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호 하기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## 1.2. 적용범위

- 1.2.1 본 정책은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, 외부자, 제3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.
- 1.2.2 본 정책은 회사가 보유한 유·무형의 모든 자산 및 임직원, 고객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 등 인적자원에 의해 파생된 자산과 활동 전체를 포괄하여 적용한다.

## 2. 정보보안 관리방침

#### 2.1. 정보보안 정책 관리

경영진의 의지와 정보보안의 방향성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는 규정과 정보보안 영역별로 구분된 세부규칙을 수립하고, 관련 법령 및 규제,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.

### 2.2 정보보안 조직

- 2.2.1 정보보안 관리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전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·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, 정보보안 ·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서, 유관부서, 부서별 책임자 및 담당자로 조직을 구성한다.
- 2.2.2 정보보안 관련 협의·조정·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보보호위원회와 정보보안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.

### 2.3 정보자산 식별 및 보안관리

- 2.3.1 모든 정보자산(서버, PC, 네트워크, 문서 등)에 대해 식별·분류·등급평가를 실시하고, 위험평가를 통해 위협을 식별하여 보호대책을 적용한다.
- 2.3.2 정보시스템 개발·운영·폐기 전 과정에서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하고, 접근통제·암호화·백업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.

#### 2.4 인적/물리보안

- 2.4.1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보안 교육·서약·권한관리 등을 실시하며, 정보유출 방지 대책을 적용한다.
- 2.4.2 보호구역을 설정하고,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통제,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물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한다.

#### 2.5. 클라우드 보안

- 2.5.1 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물리적 위치, 데이터 등급, 관리 및 운영수준을 기준으로 서비스유형을 선정하고, 보안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- 2.5.2 클라우드 표준 보안 아키텍처를 준수하여야 하며, 신규 가상자산의 생성 및 변경관리부터 운영종료 절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한다.

#### 2.6 정보보안 점검 및 감사

- 2.6.1 회사는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수행하여 국내외 정보보안 ·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.
- 2.6.2 정보보안 ·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서는 정기/비정기 점검 및 감사 활동을 통해 정책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시 대책을 마련한다.

#### 2.7 정보보안교육

- 2.7.1 정보보안 주관부서에서는 임직원 및 외부자의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·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- 2.7.2 주기적으로 정보보안 ·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, 교육 방법, 교육 대상, 교육 내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결과를 분석하여 개선한다.

## 3. 개인정보보호

### 3.1 전사 개인정보의 보호

- 3.1.1 개인정보 처리 기준,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 - 1) 개인정보의 내부관리계획 수립·시행
  - 2) 개인정보 처리 기준
  - 3) 정보주체 권리보장
  - 4)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
  - 5) 익명·가명정보 보호
  - 6)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
  - 7)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

3.1.2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서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.

#### 3.2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

- 1)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
- 2)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구분
- 3)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종교,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
- 4) 홍보·판매 목적으로 개인정보 위탁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철저히 관리
- 5) 개인정보는 데이터 암호화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처리
- 6) 개인정보 보관 시 법령에서 정한 보유기간 준수
- 7) 개인정보 수집목적 만료 시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
- 8)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반드시 안내판 설치
- 9)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·문서 등을 반드시 구비
- 10)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유출, 집단분쟁조정, 단체소송에 대비

### 4. 보안사고 대응

#### 4.1 보안사고 대응 체계 및 사후 관리

- 4.1.1 보안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하고, 보안사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사고에 대응한다.
- 4.1.2 보안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사고 대응 훈련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,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
## **5**. 재해<del>복</del>구

#### 5.1 체계구축 및 사후관리

- 5.1.1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체계에는 유관부서 및 정보보안 주관부서 등을 포함한 재해복구팀을 구성하고 책임과 역할을 정의한다.
- 5.1.2 업무영향분석을 통해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.
- 5.1.3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전략과 대책이 복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.